

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8. 9. 17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을 적법하게 관리하고, 장학생 선발자격및 지급정지요건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장학금을 객관성 있게 운용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불확실한 조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객관성 부여.
(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, 안 제7조 제1항 제1호)
- 나. 장학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용에 정확성을 기함.(안 제8조 제2항)
- 다. 장학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운용하며 기금관리는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. (안 제8조의2)
- 라. 장학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. (안 제8조의2)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64조
- 나.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156조

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인 자로 한다.
- ③일반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한다.

제7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학업성적이 불량할 때(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하)

제8조 제목중 “장학금”을 “장학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장학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.

- 1.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- 2.기금출납원 : 장학기금업무담당주사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기금운용의 계획)

- ①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장학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,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) ①(생략) ②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인 자로 한다 ③일반장학생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한다.</p>	<p>제4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) ①(현행과 같음) ②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한다. ③일반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한다.</p>
<p>제7조(지급정지) ①(생략) 1.학업성적이 불량할 때</p>	<p>제7조(지급정지) ①(현행과 같음) 1.학업성적이 불량할 때(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하)</p>
<p>제8조(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) ①(생략)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</p>	<p>제8조(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) ①(현행과 같음) ②장학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.</p>
<p>(신설)</p>	<p>1.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 2.기금출납원 : 장학기금업무담당주사</p> <p>제8조의2(기금운용의 계획) ①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 ②장학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용한다.</p>